

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1
주주총회 소집공고.....	2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3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3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3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3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3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5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5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5
III. 경영참고사항	6
1. 사업의 개요.....	6
가. 업계의 현황	6
나. 회사의 현황	7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9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의 승인.....	9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선임.....	50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51
<input type="checkbox"/>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52

주주총회소집공고

2017년 3월 9일

회 사 명 : 대원강업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성열각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송1길 114-41
(전 화)041-520-7500
(홈페이지)<http://www.daewonspri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윤승훈
(전 화)041-520-7582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70기 정기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2017년 3월 24일, 오전 10시
2. 장소: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오송1길 114-41 (대원강업 천안공장 회의실)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70기(2016.1.1~2016.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김동환 (출석률: 100%)	김도중 (출석률: 100%)	고창현 (출석률: 100%)	윤대환 (출석률: 100%)	유병하 (출석률: 100%)	전호석 (출석률: 100%)	박이수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차	2016.2.4	1.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 2. 현금배당결정(1주당 125원)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2차	2016.5.10	1. 계열회사 임보 승인(북경대원 산업은행 운전 자금 3,006만원의 연장, 대원아메리카 하나은행 운전자금 480만불 연장, 대원인도 씨티은행 운전 자금 420만불 연장, 강소대원 산업은행 시설자금 700만불 신규)	- (퇴임)	찬성	- (퇴임)	찬성	찬성	찬성 (신임)	찬성 (신임)
3차	2016.7.26	1. 임원 보수 책정의 건	-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차	2016.8.9	1. 계열회사 임보 승인(북경대원 신한은행 시설 자금 1,920만원의 연장, 대원아메리카 신한은행 운전자금 720만불 연장, 대원인도 신한은행 운전 자금 132만불 연장, 대원유럽 KEB하나은행 운전 자금 2,600만달러의 연장)	-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차	2016.11.10	1. 계열회사 임보 승인(북경대원 산업은행 시설 자금 3,165만원의 연장, 강소대원 산업은행 운전 자금 450만불 연장, 대원아메리카 KEB하나은행 시설자금 360만불 연장, 대원인도 신한은행 운전 자금 14,400만루피 연장, 대원러시아 KEB하나은행 운전자금 18,500만루블 연장, 강소대원 기업은행 시설자금 1,380만원의 신규)	-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차	2017.02.08	1.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 2. 현금배당결정(1주당 125원) 3. 계열회사 임보 승인(대원멕시코 KEB하나은행 시설자금 1,000만불, 신한은행 시설자금 1,000만불 신규)	-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사외이사	7명	4,500	343	49	-

* 주총승인금액은 총 등기이사 11명 및 2016년 3월 퇴임한 사외이사 2명에 대한 승인금액이며, 지급총액 및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016년 3월 퇴임한 사외이사 2명 포함 금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주)삼원강재 (계열회사)	매출, 매입	2016.1.1~2016.12.31	2,390	28.8

* 상기 비율은 외부감사 종료 전 2016년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8,311억원 대비 거래금액 비율임.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자동차 부품산업은 자동차 산업의 일부분으로서,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의 제조, 유통, 운행에 연관된 산업까지도 포괄하는 국가의 핵심산업입니다. 자동차 제조에는 철강, 화학, 비철금속, 전기, 전자, 고무, 유리, 플라스틱 등의 산업과 2만 여개의 부품을 만드는 부품업체들이 연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영성과는 국내 자동차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2016년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다양한 신모델 출시에 의한 신차효과와 상반기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등으로 내수 판매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자동차 수요둔화, 글로벌 자동차 업체와의 경쟁 심화 및 일부 신흥시장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하여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당사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한 4,229천대의 생산실적을 나타내었습니다. 자동차의 내수판매는 신차 효과 및 개별소비세 인하효과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1,600천대를 기록하였으며, 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 및 자동차의 해외 현지 생산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 동기 대비 11.8% 감소한 2,622천대를 나타내어 4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었습니다. 2017년은 수입차 판매 증가 및 개별소비세 인하효과 소멸로 인하여 내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7년 연간 자동차 생산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4,170천대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자동차 판매 대수 추이>

년 도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자동차생산(천대)	4,229	4,556	4,525	4,521	4,562	4,657
자동차수출(천대)	2,622	2,974	3,063	3,089	3,171	3,152
수 출 액(백만불)	37,396	42,528	45,539	44,927	43,629	42,852
연간생산능력(천대)	4,800	4,800	4,800	4,800	4,800	4,700

(참고 : KD 수출은 제외하였으며, 자료는 자동차통계월보를 참조하였음)

(3) 경기 변동의 특성

자동차 부품의 수요는 자동차 경기변동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고가의 내구 소비재로서 소비자의 구매형태와 소득 수준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경기 호황시에는 소득 수준의 상승으로 수요 증가와 수요의 고급화 경향을 띄는 반면 경기침체로 소득수준이 낮아지면 구매력 감소와 경차 구입 등 경제성을 위주로 한 구매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4) 경쟁 요소

해외 자동차 업체의 국내 자동차산업 진출과 세계 자동차업체의 대형화 등으로 자동차

부품의 구매 방식도 모듈화 및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에 근거한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어 국내외 부품업체들간의 경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부품업체들은 해외 진출 등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은 인수·합병 및 도태 등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대형 부품업체의 탄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부품업체들도 해외 부품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세계수준의 품질,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 스프링 메이커인 당사는 스프링 일관생산체제를 갖추고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및 관련기술의 연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스프링 부문 및 시트 부문에 대한 ISO/TS 16949 인증을 보유하여 품질면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스프링 부문 및 시트 부문에 대한 ISO 14001 인증을 유지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개척의 일환으로 해외자동차사 진출을 적극 추진하여 GM, 크라이슬러, 폭스바겐, BMW에 코일스프링 및 스테빌라이저바를 공급 중에 있으며, 제품, 소재뿐만 아니라 설비수출을 통한 세계시장으로의 진출도 적극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현재 남미, 중국 및 유럽 등 여러 회사와 스프링 제조기술 이전에 관한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당사의 기술을 세계 여러 나라에 제공하는 등 당사의 기술수준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5) 자원조달상의 특성

스프링 제조용 소재는 특수강인 스프링강으로서 국내에서는 포스코, 삼원강재 등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밀 선스프링용 선재는 고려제강 등 국내업체 이외에도 일본의 여러 업체로부터 장기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자동차산업 관련 법령 및 각종 정부규제로서는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 등 자동차의 안전 관련 규제, 배기가스, 소음, 유해물질 등 환경 규제와 공정거래 관련 규제, 수출입 관련 규제, 교통운수 관련규제 및 각종 자동차 관련 조세제도 등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자동차의 구매 / 등록 / 소유 / 운행과정에는 모두 14종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유사 성격의 세금을 중복 부과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자동차와 무관한 세금을 부과하여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자동차의 중요 핵심기능 부품인 스프링 및 시트를 생산,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업체로서 자동차 생산판매의 증가에 따라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 2016년 매출은 834,44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한 실적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된 실적을 나타내어 회사의 주력제품인 스프링의 매출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시트, 정밀스프링이 증가된 매출 실적을 나타내었기 때문입니다.

○ 손익면에서는 26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나타내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시장점유율

○ 스프링제품

스프링의 경우 주로 자동차에 소요되는 열간스프링 제조업체는 당사와 삼목강업이 있으며, 국내시장 점유율은 약 80:20으로 최근 3년간 점유율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동차 및 각종 산업용에 소요되는 냉간스프링(정밀 선스프링)의 제조업체는 당사를 비롯하여 국내에 수백여개가 있음. 제품별 용도, 형태, 크기, 사용재료 및 요구품질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당사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시트제품

국내의 각종 차량용(자동차 및 철도시트 포함) 시트 제조업체는 현대자동차의 시트 사업부(현대자동차 소요분 자체조달)가 국내시장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밖에 당사, KM&I, 현대 M Seat, 대원산업, 대유에이텍, JCI, DAS, DK Lear 등 다수의 업체가 있으며 시장 점유율은 각각 비슷한 수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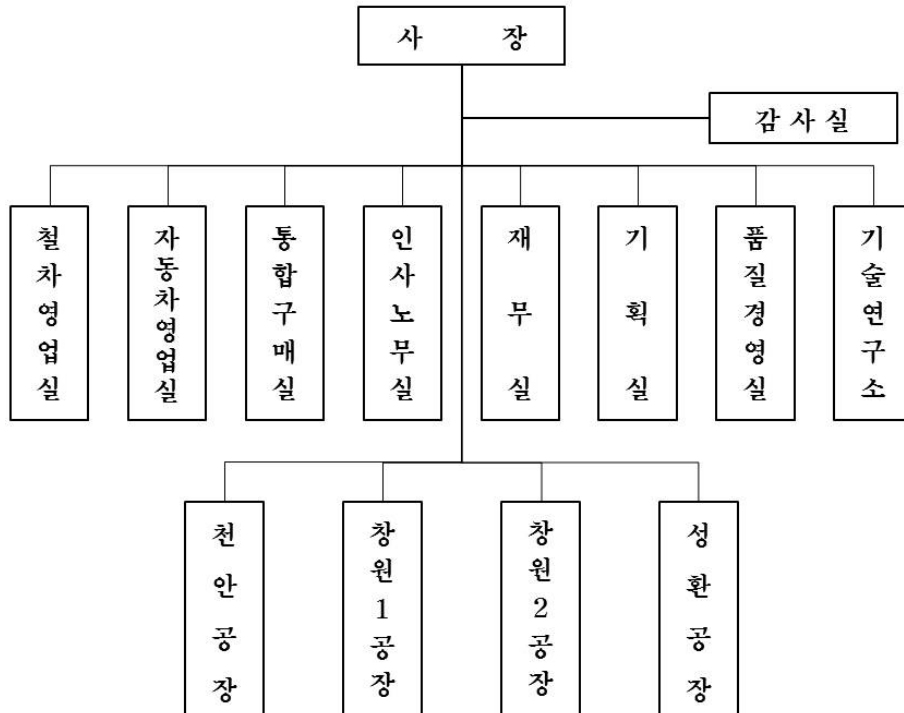
(3) 시장의 특성

당사의 주요제품인 차량용 스프링 및 시트의 주요시장은 자동차회사이며, 전량 주문에 의해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내수 대 수출(LOCAL 포함)의 비율은 약 52:48 정도입니다. 또한 동유럽 및 동남아, 중국 등 자동차산업이 성장 초기에 있는 국가로 수출 또는 합작투자를 통한 해외시장에의 진출이 유망한 업종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5)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중 나. 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 연결손익계산서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 연결자본변동표 · 연결현금흐름표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식,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자본변동표 · 현금흐름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식

※ 연결재무제표(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및 재무제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는 제출일 현재 감사 후 회계법인 내부 심리 중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작성된 것으로 심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70기 기말 :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69기 기말 : 2015년 12월 31일 현재

대원강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70(당)기 기말		제69(전)기 기말	
자산					
Ⅰ. 유동자산			456,439,246,435		394,061,104,791
1. 현금및현금성자산	4, 5, 6	58,234,305,189		34,185,839,803	
2. 금융기관예치금	4, 5, 6, 10	10,603,000,000		4,914,200,000	
3. 매출채권	4, 5, 6, 7, 9	256,724,209,453		207,036,170,962	
4. 기타수취채권	4, 5, 6, 9	26,226,917,049		31,996,017,638	
5. 재고자산	11	99,611,204,911		112,281,467,429	
6. 만기보유금융자산	4, 5, 6	12,740,000		2,770,000	
7. 기타유동자산		5,026,869,833		3,644,638,959	
Ⅱ. 매각예정비유동자산	13		17,300,000,000		-
Ⅲ. 비유동자산			814,624,725,575		763,407,754,145
1. 금융기관예치금	4, 5, 6, 10	2,419,477,980		2,471,315,417	
2. 매도가능금융자산	4, 5, 6, 8	29,471,392,074		21,081,631,549	
3. 만기보유금융자산	4, 5, 6	219,435,000		228,660,000	
4. 관계기업투자주식	12	19,722,151,376		20,145,246,472	
5. 장기기타수취채권	4, 5, 6, 9	6,473,273,356		6,628,422,908	
6. 유형자산	14	741,898,010,327		697,258,052,491	
7. 무형자산	15	11,348,061,447		11,815,411,692	
8. 이연법인세자산	28	1,336,829,408		1,964,524,414	
9. 기타비유동자산		1,736,094,607		1,814,489,202	
자산총계			1,288,363,972,010		1,157,468,858,936
부채					
Ⅰ. 유동부채			586,351,352,411		500,134,767,148
1. 매입채무	4, 5, 6, 16	174,451,254,044		156,012,132,748	
2. 유동차입금	4, 5, 6, 17	317,880,000,277		279,575,497,120	
3. 미지급법인세		5,543,236,713		8,852,493,090	
4. 미지급배당금	4, 5, 6	4,932,670		5,053,530	
5. 기타지급채무	4, 5, 6, 16	69,861,391,871		47,540,256,297	
6. 기타유동부채		18,610,536,836		8,149,334,363	
Ⅱ. 비유동부채			147,841,223,699		146,960,312,827
1. 비유동차입금	4, 5, 6, 17	63,926,791,967		67,454,841,037	

2. 순확정급여부채	18	25,464,258,345		26,633,573,476	
3. 총당부채	19	9,849,010,902		7,600,465,806	
4. 이연법인세부채	28	39,257,830,134		35,994,300,071	
5. 장기기타지급채무	4, 5, 6, 16	5,678,671,779		4,890,260,929	
6. 장기기타비유동부채		3,664,660,572		4,386,871,508	
부채총계			734,192,576,110		647,095,079,975
자본					
지배주주지분					
I. 자본금	20		31,000,000,000		31,000,000,000
II. 자본잉여금	20		17,426,962,934		17,426,962,934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2,233,101,101)		-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1		1,706,414,089		1,247,068,210
V. 이익잉여금	22		401,155,248,784		369,712,869,057
비지배주주지분			105,115,871,194		90,986,878,760
자본총계			554,171,395,900		510,373,778,961
부채와 자본총계			1,288,363,972,010		1,157,468,858,936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손 익 계 산 서

제70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69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원강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70(당)기		제69(전)기	
I. 매출액	23		1,076,116,262,240		1,013,035,744,301
II. 매출원가	25		940,424,111,910		885,506,549,916
III. 매출총이익			135,692,150,330		127,529,194,385
IV. 판매비와관리비	24, 25		76,004,256,883		74,730,876,679
V. 영업이익			59,687,893,447		52,798,317,706
VI. 영업외손익			(2,467,816,761)		(15,246,308,871)
1. 기타수익	6, 26	26,231,387,033		20,470,265,109	
2. 기타비용	6, 26	19,557,650,853		20,190,313,520	
3. 금융수익	6, 27	2,302,407,757		3,461,318,747	
4. 금융비용	6, 27	15,477,112,778		19,472,385,313	
5. 관계기업투자손익	12, 34	4,033,152,080		484,806,106	
V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7,220,076,686		37,552,008,835
VIII. 법인세비용	28		11,078,953,092		11,287,121,431
IX. 연결당기순이익			46,141,123,594		26,264,887,404
1. 지배주주순이익		38,373,668,071		18,882,889,512	
2. 비지배주주순이익		7,767,455,523		7,381,997,892	
X. 지배기업소유지분에 대한 주당이익					
기본(희석)주당순이익	29		619		305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70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69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원강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70(당)기		제69(전)기	
I. 당기순이익		46,141,123,594		26,264,887,404
II. 기타포괄손익		1,095,487,731		(6,084,273,579)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2,241,752,210)		(4,745,550,566)
(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241,752,210)		(4,745,550,566)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3,337,239,941		(1,338,723,013)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4,872,999,100		(3,254,828,586)	
(2) 지분법 자본변동	(1,054,974,438)		(266,154,741)	
(3) 해외사업환산손익	(480,784,721)		2,182,260,314	
III. 총포괄손익		47,236,611,325		20,180,613,825
1.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39,027,678,420		13,503,584,197	
2. 비지배지분	8,208,932,905		6,677,029,628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70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69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원강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소계		
I. 2015년 1월 1일 현재	31,000,000,000	19,352,239,037	-	2,716,509,820	362,179,843,250	415,248,592,107	75,359,569,379	490,608,161,486
II. 총포괄손익								
1. 당기순이익	-	-	-	-	18,882,889,512	18,882,889,512	7,381,997,892	26,264,887,404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	(3,254,828,586)	-	(3,254,828,586)	-	(3,254,828,586)
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3,909,863,705)	(3,909,863,705)	(835,686,861)	(4,745,550,566)
4. 자본법자본변동	-	-	-	(266,154,741)	-	(266,154,741)	-	(266,154,741)
5. 해외사업장외화환산손익	-	-	-	2,059,907,001	-	2,059,907,001	122,353,313	2,182,260,314
III. 소유주와의 거래								
1. 현금배당	-	-	-	-	(7,440,000,000)	(7,440,000,000)	(2,100,000,000)	(9,540,000,000)
2. 종속기업 지분을 변동	-	(1,925,276,103)	-	(8,365,284)	-	(1,933,641,387)	11,058,645,037	9,125,003,650
IV. 2015년 12월 31일 현재	31,000,000,000	17,426,962,934	-	1,247,068,210	369,712,869,057	419,386,900,201	90,986,878,760	510,373,778,961
I. 2016년 1월 1일 현재	31,000,000,000	17,426,962,934	-	1,247,068,210	369,712,869,057	419,386,900,201	90,986,878,760	510,373,778,961
II. 총포괄손익								
1. 당기순이익	-	-	-	-	38,373,668,071	38,373,668,071	7,767,455,523	46,141,123,594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	-	4,875,696,120	-	4,875,696,120	(2,697,020)	4,872,999,100
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2,606,423,890)	(2,606,423,890)	364,671,680	(2,241,752,210)
4. 자본법자본변동	-	-	-	(1,054,974,438)	-	(1,054,974,438)	-	(1,054,974,438)
5. 해외사업장외화환산손익	-	-	-	(560,287,443)	-	(560,287,443)	79,502,722	(480,784,721)
III. 소유주와의 거래								
1. 현금배당	-	-	-	-	(7,750,000,000)	(7,750,000,000)	(2,500,000,125)	(10,250,000,125)
2. 자기주식거래	-	-	(204,309,565)	-	-	(204,309,565)	(204,309,585)	(408,619,150)
IV. 사업결합으로 인한 변동								
1. 자기주식 대체	-	-	(2,028,791,536)	-	-	(2,028,791,536)	(2,794,773,694)	(4,823,565,230)
2. 자본법자본변동의 조정	-	-	-	(2,801,088,360)	3,425,135,546	624,047,186	-	624,047,186
3. 비지배주주지분의 증가	-	-	-	-	-	-	11,419,142,933	11,419,142,933
V. 2016년 12월 31일 현재	31,000,000,000	17,426,962,934	(2,233,101,101)	1,706,414,089	401,155,248,784	449,055,524,706	105,115,871,194	554,171,395,900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70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69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원강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70(당)기		제69(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0,552,534,886		96,774,203,298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31	116,957,633,877		117,272,463,936	
가. 당기순이익		46,141,123,594		26,264,887,404	
나. 조정		83,982,141,498		100,814,041,734	
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13,165,631,215)		(9,806,465,202)	
2. 이자의 수취		816,001,022		683,777,694	
3. 이자의 지급		(12,780,003,146)		(12,433,410,019)	
4. 배당금의 수취		1,405,256,951		1,025,435,800	
5. 법인세비용의 납부		(15,846,353,818)		(9,774,064,113)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7,461,744,272)		(41,335,825,307)
1.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31,610,856,603		32,079,852,336	
가. 금융기관예치금의 감소		6,124,450,000		12,200,000,000	
나.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500,000		109,090,909	
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처분		2,770,000		32,950,000	
라. 유형자산의 처분		2,065,966,270		1,669,993,246	
마.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		17,136,000,000	
바. 무형자산의 처분		90,909,091		931,818,181	
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처분		18,136,261,242		-	
아.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선수금 증가		5,190,000,000			
2.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119,072,600,875)		(73,415,677,643)	
가. 금융기관예치금의 증가		10,661,662,563		8,910,427,463	
나.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439,300,000		301,204,440	
다. 만기보유자산의 증가		3,450,000		-	
라. 유형자산의 취득		88,383,724,893		63,682,649,516	
바. 무형자산의 취득		481,989,284		521,396,224	
사. 관계기업주식의 취득		247,500,000		-	
아. 종속기업주식의 취득(보유현금 차감)		854,974,135		-	
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18,000,000,000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008,220,496		(48,764,220,034)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203,627,330,734		143,788,717,198	
가. 유동차입금의 증가		164,701,180,734		110,599,899,065	
나. 비유동차입금의 증가		38,926,150,000		21,608,083,461	
다. 판매후리스로 인한 증가		-		2,492,231,032	
라. 종속회사지분의 처분		-		9,088,503,64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183,619,110,238)		(192,552,937,232)	
가. 유동차입금의 감소		141,726,408,852		179,854,944,995	
나 비유동차입금의 감소		31,066,634,411		3,159,424,117	
다. 배당금의 지급	30	10,249,382,595		9,538,568,120	
라. 자기주식의 취득		576,684,38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949,454,276		496,700,677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I + II + III + IV)			24,048,465,386		7,170,858,634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4,185,839,803		27,014,981,169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58,234,305,189		34,185,839,803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70기 :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69기 : 2015년 12월 31일 현재

대원강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연결재무제표이며, 지배회사인 대원강업 주식회사(이하 "지배회사")와 주식회사 삼원강재 등 종속기업(이하 지배회사와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의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회사의 현황

지배회사는 각종 차량 및 산업용 스프링·차량용시트·기계설비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여 1946년 9월 20일 설립되었습니다. 지배회사는 1977년 6월 22일발행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수차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31,000백만원입니다.

지배회사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송1길 114-41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충청남도 천안시 및 경상남도 창원시 등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회사의 대표이사는 성열각외 2인이며, 지배회사의 최대주주는 허재철 및 특수관계자로 발행주식의 34.7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종속기업의 현황

2016년 12월 31일 현재 지배회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 사 명	결 산 일	지분율(%)		투자주식수(단위:주)	
		2016년	2015년	2016년	2015년
삼원강재(*1)	12월 31일	49.99	49.99	19,999,999	19,999,999
북경대원	12월 31일	100.00	100.00	(*2)	(*2)
대원아메리카(*3)	12월 31일	82.05	82.05	16,000,000	16,000,000
대원인디아(*4)	3월 31일	100.00	100.00	(*2)	(*2)
대원유럽	12월 31일	100.00	100.00	122,946	122,946
강소대원	12월 31일	100.00	100.00	(*2)	(*2)
대원러시아	12월 31일	100.00	100.00	(*2)	(*2)
대원멕시코	12월 31일	100.00	100.00	(*2)	(*2)
대원제강(*5)	12월 31일	42.06	28.73	54,684	37,354

(*1) 지배회사의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나머지 주주들의 개별 지분율과 최근 3년간

주주총회 참석율을 고려한 결과, 지배회사의 지분율만으로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지배회사가 삼원강재를 지배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므로 투자주식수가 없습니다.

(*3) 잔여지분은 삼원강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4) 결산월이 3월로서 지배기업과 다르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연결하였습니다.

(*5) 당기 중 종속기업인 삼원강재가 대원제강의 지분 13.33%를 취득하여 지배기업과 삼원강재의 대원제강에 대한 지분율이 42.06%가 되었습니다. 지배기업과 삼원강재의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나머지 주주들의 개별 지분율과 최근 3개년간 주주총회 참석율을 고려한 결과, 두 회사의 지분율만으로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대원제강을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 종속기업의 영업내용 등

종속기업의 영업활동 내용 및 지배회사와의 영업활동과 관련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소재지	영업내용	지배회사와의 영업활동 관련성
삼원강재	경북 포항	평강, 봉강, 특수이형강 및 스프링 제조 및 판매	원재료 공급
북경대원	중국	각종 차량부품 및 관련제품의 제조 및 판매	현지 생산 및 판매 거점
대원아메리카	미국		
대원인디아	인도		
대원유럽	폴란드		
강소대원	중국		
대원러시아	러시아		
대원멕시코	멕시코		
대원제강	한국	(*1)	(*1)

(*1) 일반주강 및 특수주강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였으나, 전기 중에 대원제강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주요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목적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종속기업 관련 재무정보 요약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2016년 12월 31일과 2015년 12월 31일 현재 요약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2016년	자산	부채	매출액	당기순손익
삼원강재	234,265	45,067	268,399	14,206
북경대원	97,720	56,812	127,670	2,030
대원아메리카	122,436	94,446	132,417	4,091
대원인디아(*1)	24,725	22,014	25,943	797
대원유럽	68,874	57,289	52,848	(1,366)
강소대원	64,072	52,725	58,815	2,780
대원러시아	23,685	23,350	31,551	(1,790)
대원멕시코	37,575	27,339	-	(1,656)
대원제강(*2)	24,524	9,880	-	1,038

(*1) 결산월이 3월로서 지배기업과 다르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연결하였습니다.

(*2)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연결범위에 포함된 시점 이후 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단위:백만원)

2015년	자산	부채	매출액	당기순손익
삼원강재	223,484	44,347	272,321	15,839
북경대원	99,988	59,926	111,214	(2,874)
대원아메리카	121,774	98,762	118,723	176

대원인디아(*1)	29,814	27,941	24,770	(281)
대원유럽	69,976	56,464	57,679	198
강소대원	55,456	46,612	49,089	(1,846)
대원러시아	14,742	12,833	4,137	(1,943)
대원멕시코	2,179	23	-	(65)

(*1) 결산월이 3월로서 지배기업과 다르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연결하였습니다.

(5)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당기 중 대원제강이 연결대상범위에 추가되었습니다.

(6) 비지배지분과의 거래

당기 중 종속회사인 삼원강재가 대원제강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1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중요성에 따라 공시항목의 생략, 추가, 통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후속적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분리하여 표시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주석공시 순서 등에 대한 일부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생물자산 생산용식물(Bearer Plants)'을 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적용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은 명백한 반증을 제공할 수 있는 무형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110호 '연결채무제표',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기준서 제1112호 '타기업에 대한 지분공시': 투자기업의 연결예외
 - 기준서 제1110호 '연결채무제표'는 상위 지배회사가 투자기업인 경우도 연결채무제표 작성이 면제 가능한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투자기업은 자신을 위해 '투자활동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종속기업'이 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투자기업이 아닌 투자자가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지분을 보유한 경우, 해당 관계기업에 지분법을 적용 시 회계정책을 일치시키지 않을 수 있는 면제를 추가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112호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는 연결채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투자기업도 해당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투자기업과 관련된 사항들을 공시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공동약정 중 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 하는 경우, 사업결합 회계에 대한 모든 원칙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2-2014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매각 예정 및 소유주에 대한 분배 예정 분류 간 상호 대체 시 기존 회계처리를 그대로 유지함을 명확히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금융자산 양도 시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용역계약이 포함된 경우 지속적 관여 여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2012 년의 개정사항인 '공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의한 추가적인 공시가 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요구되지 않는다면 모든 중간기간에 대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퇴직급여채무 측정에 사용되는 할인율 결정시 부채가 발생하는 국가가 아닌, 부채가 표시되는 통화가 중요한 고려요소임을 명확히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기준서상'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에 공시된 정보'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였으며, 중간재무제표와 관련정보간의 상호참조에 대한 요구사항을 추가로 개정함.
- 기준서 1011호 '건설계약', 기준서 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해석서 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수주산업 회계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기 위해, 수주산업 특유의 회계 추정 및 잠재리스크 관련 정보를 개별공사별 또는 영업부문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연결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변동을 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거래로 인한 변동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7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세무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실현손실에 대해서 일시적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7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변경 시 조건변경 회계처리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동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

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 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355,974백만원, 만기보유금융자산 232백만원 및 매도가능금융자산 29,471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355,974백만원 및 만기보유금융자산 232백만원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 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의 2016년 12월 31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은 29,471백만원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②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

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분(*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 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통제 절차의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연결회사는 2017년 3분기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7년 3분기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2.3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 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 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및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2) 손상

연결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됐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더 이상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해당 금융자산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 또는 지연 등의 계약위반,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로부터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3) 제거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됩니다.(주석7 참조)

2.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 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월 총평 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8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20~40년
구축물	20~40년
기계장치	5~10년
공구와기구	2~5년
비품	5년
기타의유형자산	3~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 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2 무형자산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상표권과 라이선스	15~20년
소프트웨어 개발비	3~5년
계약적 고객관계	3~5년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4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2.1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6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7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장기종업원급여

연결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5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러한 급여의 예상 원가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원가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 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18 수익인식

수익은 연결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해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돼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며,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 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 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추정은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 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연결회사는 각종 차량 및 산업용 스프링·차량용시트·기계설비와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습 니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인도는 재화가 특정 장소로 이전되고, 재화의 진부화와 손실에 대한 위험이 구매자에 게 이전되며, 구매자가 판매계약에 따라 재화의 수령을 승인하거나 그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회사가 재화의 수령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는 시점이 되어 야 발생합니다.

(2) 로열티수익

로열티 수익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발생기준에 의하여 인식하되, 동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

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3)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까지 감액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19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인 연결회사에게 이전되지 않은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지급액은 리스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비용인식 됩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인 연결회사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 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이 리스기간 개시일에 각각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계상됩니다.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리스료 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0 영업부문

연결회사는 차량 및 산업용 스프링 및 시트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단일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라 구분된 영업부문은 없습니다.

2.21 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2017년 2월 8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 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주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70기 기말 :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69기 기말 : 2015년 12월 31일 현재

대원강업 주식회사

(단위 : 원)

과목	주석	제70(당)기 기말		제69(전)기 기말	
자산					
I. 유동자산			281,707,061,332		231,140,217,199
1. 현금및현금성자산	4, 5, 6	16,890,034,141		31,032,872	
2. 금융기관예치금	4, 5, 6, 10	5,230,000,000		2,600,000,000	
3. 매출채권	4, 5, 6, 7, 9	206,495,567,175		164,998,436,961	
4. 기타수취채권	4, 5, 6, 9	29,159,475,720		23,717,064,541	
5. 재고자산	11	21,997,631,013		38,171,409,645	
6. 기타유동자산		1,934,353,283		1,622,273,180	
II. 비유동자산			549,345,452,795		527,838,189,531
1. 금융기관예치금	4, 5, 6, 10	1,891,000,000		2,157,000,000	
2. 매도가능금융자산	4, 5, 6, 8	27,905,331,219		21,031,631,549	
3.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	12	142,424,072,903		132,839,562,903	
4. 유형자산	13	362,096,203,955		355,574,319,532	
5. 무형자산	14	9,517,080,311		10,004,606,311	
6. 장기기타수취채권	4, 5, 6, 9	5,177,883,499		6,081,962,423	
7. 기타비유동자산		333,880,908		149,106,813	
자산총계			831,052,514,127		758,978,406,730
부채					
I. 유동부채			344,365,342,415		295,296,737,226
1. 매입채무	4, 5, 6, 15	120,196,354,180		129,537,467,270	
2. 유동차입금	4, 5, 6, 16	178,743,934,752		127,528,359,219	
3. 미지급법인세		3,577,812,734		5,433,148,838	
4. 미지급배당금	4, 5, 6	4,932,670		5,053,530	
5. 기타지급채무	4, 5, 6, 15	33,185,978,745		28,297,130,443	
6. 기타유동부채		8,656,329,334		4,495,577,926	
II. 비유동부채			95,696,592,671		93,064,533,514
1. 비유동차입금	4, 5, 6, 16	32,379,890,000		32,388,500,000	
2. 순확정급여부채	17	22,896,733,113		21,873,358,999	
3. 총당부채	18	9,748,590,658		7,376,815,962	
4. 이연법인세부채	27	24,860,451,723		26,361,789,303	
5. 장기기타지급채무	4, 5, 6, 15	4,898,547,849		4,224,698,863	
6. 금융보증부채	5, 6	912,379,328		839,370,387	
부채총계			440,061,935,086		388,361,270,740
자본					
I. 자본금	19		31,000,000,000		31,000,000,000
II. 자본잉여금	19		13,989,199,994		13,989,199,994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0		13,748,795,636		8,871,141,686
IV. 이익잉여금	21		332,252,583,411		316,756,794,310

자본총계			390,990,579,041		370,617,135,990
부채와 자본총계			831,052,514,127		758,978,406,730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손익계산서

제70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69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원강업 주식회사

(단위 : 원)

과목	주석	제70(당)기		제69(전)기	
I. 매출액	22		834,440,830,495		773,296,717,459
II. 매출원가	11, 24		763,146,347,213		702,402,780,606
III. 매출총이익			71,294,483,282		70,893,936,853
IV. 판매비와관리비	24, 23		41,985,831,292		43,058,554,802
V. 영업이익			29,308,651,990		27,835,382,051
VI. 영업외손익			1,852,050,296		2,948,702,922
1. 기타수익	6, 25	19,854,933,940		16,025,882,449	
2. 기타비용	6, 25	12,966,472,660		10,543,228,492	
3. 금융수익	6, 26	99,505,338		165,425,011	
4. 금융비용	6, 26	5,135,916,322		5,831,877,299	
5. 종속및관계기업투자주식 처분손익	12	-		3,132,501,253	
V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1,160,702,286		30,784,084,973
VIII. 법인세비용	27		4,943,817,652		4,958,897,741
IX. 당기순이익			26,216,884,634		25,825,187,232
X. 주당이익					
기본(희석)주당순이익	28		423		417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

제70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69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원강업 주식회사

(단위 : 원)

과목	제70(당)기		제69(전)기	
I. 당기순이익		26,216,884,634		25,825,187,232
II. 기타포괄손익		1,906,558,417		(6,329,005,513)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2,971,095,533)		(3,074,176,927)
(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971,095,533)		(3,074,176,927)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4,877,653,950		(3,254,828,586)
(1) 매도가능자산평가손익	4,877,653,950		(3,254,828,586)	
III. 총포괄손익		28,123,443,051		19,496,181,719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70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 2017년 3월 24일)

제69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처분일 : 2016년 3월 18일)

대원강업 주식회사

(단위 : 원)

과목	제 70(당) 기		제 69(전) 기	
I. 미처분 이익잉여금		319,934,056,611		305,213,267,510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96,688,267,510		282,462,257,205	
2. 순확정급여부채 등의 재측정요소	(2,971,095,533)		(3,074,176,927)	
3. 당기순이익	26,216,884,634		25,825,187,232	
II. 이익잉여금 처분액		8,525,000,000		8,525,000,000
1. 이익준비금	775,000,000		775,000,000	
2. 배당금(현금배당)	7,750,000,000		7,750,000,000	
(주당배당금(율))				
당기 : 125 원(25%)				
전기 : 125 원(25%)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11,409,056,611		296,688,267,510

자 본 변 동 표

제70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69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원강업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 계
I. 2015년 1월 1일 현재	31,000,000,000	13,989,199,994	12,125,970,272	301,445,784,005	358,560,954,271
II. 총포괄손익					
1. 당기순이익	-	-	-	25,825,187,232	25,825,187,232
2. 매도가능자산평가손익	-	-	(3,254,828,586)	-	(3,254,828,586)
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3,074,176,927)	(3,074,176,927)
III. 소유주와의 거래					
1. 현금배당	-	-	-	(7,440,000,000)	(7,440,000,000)
IV. 2015년 12월 31일 현재	31,000,000,000	13,989,199,994	8,871,141,686	316,756,794,310	370,617,135,990
I. 2016년 1월 1일 현재	31,000,000,000	13,989,199,994	8,871,141,686	316,756,794,310	370,617,135,990
II. 총포괄손익					
1. 당기순이익	-	-	-	26,216,884,634	26,216,884,634
2. 매도가능자산평가손익	-	-	4,877,653,950	-	4,877,653,950
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2,971,095,533)	(2,971,095,533)
III. 소유주와의 거래					
1. 현금배당	-	-	-	(7,750,000,000)	(7,750,000,000)
IV. 2016년 12월 31일 현재	31,000,000,000	13,989,199,994	13,748,795,636	332,252,583,411	390,990,579,041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금흐름표

제70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69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원강업 주식회사

(단위 : 원)

과목	주석	제70(전기)		제69(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997,137,504		47,052,738,181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30	27,263,715,812		54,799,372,462	
가. 당기순이익		26,216,884,634		25,825,187,232	
나. 조정		37,005,507,043		40,948,154,573	
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35,958,675,865)		(11,973,969,343)	
2. 이자의 수취		81,596,169		236,728,384	
3. 이자의 지급		(5,107,475,113)		(5,761,013,495)	
4. 배당금의 수취		3,668,482,126		3,725,435,800	
5. 법인세비용의 납부		(8,909,181,490)		(5,947,784,97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3,984,020,828)		(1,010,648,965)
1.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4,284,496,039		38,043,403,916	
가. 금융기관예치금의 감소		3,600,000,000		9,200,000,000	
나.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500,000		109,090,909	
다. 종속및관계기업 지분의 처분		-		9,088,503,640	
라. 유형자산의 처분		593,086,948		1,577,991,186	
마.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		17,136,000,000	
바. 무형자산의 처분		90,909,091		931,818,181	
2.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48,268,516,867)		(39,054,052,881)	
가. 금융기관예치금의 증가		5,964,000,000		6,934,000,000	
나.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439,300,000		301,204,440	
다. 종속및관계기업 지분의 취득		9,584,510,000		6,116,910,998	
라. 유형자산의 취득		32,186,682,867		25,524,109,443	
마. 무형자산의 취득		94,024,000		177,828,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3,457,583,063		(46,054,466,561)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60,933,765,533		20,249,000,000	
가. 유동차입금의 증가		39,182,765,533		-	
나. 비유동차입금의 증가		21,751,000,000		20,249,0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17,476,182,470)		(66,303,466,561)	
가. 유동차입금의 상환		-		55,714,898,441	
나. 비유동차입금의 상환		9,726,800,000		3,150,000,000	
다. 배당금의 지급	29	7,749,382,470		7,438,568,12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388,301,530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I + II + III + IV)			16,859,001,269		(12,377,345)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1,032,872		43,410,217
VI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6,890,034,141		31,032,872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70기 :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69기 : 2015년 12월 31일 현재

대원강업 주식회사

1. 일반사항

대원강업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각종 차량 및 산업용 스프링·차량용시트·기계설비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여 1946년 9월 20일 설립되었습니다. 회사는 1977년 6월 22일 발행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수차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31,000백만원입니다.

회사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송1길 114-41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충청남도 천안시와 경상남도 창원시 등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대표이사는 성열각외 2인이며, 회사의 최대주주는 허재철 및 특수관계자로 발행주식의 34.7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회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회사는 201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중요성에 따라 공시항목의 생략, 추가, 통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후속적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분리하여 표시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

한, 기타 주식공시 순서 등에 대한 일부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생물자산
생산용식물(Bearer Plants)'을 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기준
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적용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은 명백한 반증을 제공할
수 있는 무형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기준서 제1112호 '타기업에 대한 지분공시': 투자기업의 연결예외
·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는 상위 지배회사가 투자기업인 경우도 연결재무제표 작
성이 면제 가능한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투자기업은 자신을 위해 '투자활동 관련 용역을 제
공하는 종속기업'이 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투자기업이 아닌 투자자가 투자기업
인 관계기업지분을 보유한 경우, 해당 관계기업에 지분법을 적용 시 회계정책을 일치시키지
않을 수 있는 면제를 추가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112호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투자기업
도 해당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투자기업과 관련된 사항들을 공시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
다.

- 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공동약정 중 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 하는 경우, 사업결합 회계에 대
한 모든 원칙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2-2014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매각 예정 및 소유주에 대한
분배 예정 분류 간 상호 대체 시 기존 회계처리를 그대로 유지함을 명확히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금융자산 양도 시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용역계
약이 포함된 경우 지속적 관여 여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2012 년의 개정사항인
'공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의한 추가적인 공시가 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
고' 에 따라 요구되지 않는다면 모든 중간기간에 대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퇴직급여채무 측정에 사용되는 할인율 결정시 부
채가 발생하는 국가가 아닌, 부채가 표시되는 통화가 중요한 고려요소를 명확히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기준서상'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에 공시된
정보'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였으며, 중간재무제표와 관련정보간의 상호참조
에 대한 요구사항을 추가로 개정함.

- 기준서 1011호 '건설계약', 기준서 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해석서
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수주산업 회계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기 위해, 수주산업 특유의 회계 추정 및 잠재 리스크
관련 정보를 개별공사별 또는 영업부문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제정 또는 공포됐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변동을 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거래로 인한 변동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7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세무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실현손실에 대해서 일시적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7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변경 시 조건변경 회계처리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동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261,188백만원, 매도가능금융자산 27,905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261,188백만원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 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2016년 12월 31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은 27,905백만원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②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분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 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 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통제절차의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2017년 3분기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7년 3분기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2.3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 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되고,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 현재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 금융자산

(1) 분류 및 측정

회사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만기보유 금융자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및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 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2) 손상

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 기간말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더 이상 회수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해당 금융자산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이차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 또는 지연 등의 계약위반,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로부터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경우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3) 제거

회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주석7 참조).

(4)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

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7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 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월 총평 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9 매각예정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 물	30 ~ 50 년
구 축 물	20 ~ 40 년
기 계 장 치	15 ~ 20 년
차 량 운 반 구	6 년
공 구 와 기 구	8 년
비 품	6 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2.11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 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3 무형자산

회사의 무형자산은 회원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권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2.14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5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2.16 금융보증계약

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금융보증부채"로 인식됩니다.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 (2)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인식'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 금액을 차감한 금액

2.17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8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9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

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장기종업원급여

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5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러한 급여의 예상원가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원가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20 수익인식

수익은 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며,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추정은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회사는 각종 차량 및 산업용 스프링·차량용시트·기계설비와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인도는 재화가 특정 장소로 이전되고, 재화의 진부화와 손실에 대한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구매자가 판매계약에 따라 재화의 수령을 승인하거나 그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회사가 재화의 수령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는 시점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2) 로열티수익

로열티 수익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발생기준에 의하여 인식하되, 동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

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3)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까지 감액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 영업부문

회사는 차량 및 산업용 스프링 및 시트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단일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라 구분된 영업부문은 없습니다.

2.22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17년 2월 8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 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 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허승호	1962.10.17	사내이사	당질	이사회
성열각	1950. 8. 4	사내이사	없음	이사회
허재웅	1953. 4.13	사내이사	제	이사회
총 (3)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허승호	대원강업(주) 부회장	1999년 대원강업(주) 사장 2006년 (현)대원강업(주) 부회장	해당사항 없음
성열각	대원강업(주) 사 장	1998년 대원강업(주) 부사장 2006년 (현)대원강업(주) 사장	해당사항 없음
허재웅	대원강업(주) 부사장	2010년 대원강업(주) 집행임원(부사장) 2011년 (현)대원강업(주) 부사장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11명(5명)	10명(4명)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4,500백만원	4,0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명	1명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00백만원	2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